

11. 骨材採取法施行規則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312號 1995.10.14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개정된 골재채취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66호 '95.6.16.)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법시행령에서 하천구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할 경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토록 함에 따라 협의대상 규모의 구역은 50만m² 이상인 경우로 하며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함.

나. 골재채취업 등록시 첨부서류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정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등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골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관청 또는 골재채취 허가관청과 실제 채취(선별·세척·파쇄포함) 지역이 다를 경우 지도·감독이 곤란하므로 채취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내용을 등록관청 또는 채취허가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골재채취업자가 미제염된 바다골재를 반출시에는 반출일 1일전까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출량, 공급처 및 사용목적등을 보고하도록 함.

마. 규제완화를 위하여 골재채취후 골재채취 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예치를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증서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
증서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조 : 건설경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051~2)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